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1호가목 중 "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(「보험업법」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), 다목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"를 "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1호가목"을 "별표 1의3 제5호"로 한다.

제16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: 다음 각 목 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 - 가. 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
 - 나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(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확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
- 2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 - 가. 별표 1의3 제5호의 금액
 - 나.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「보험업법」 제1

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(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)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. 제21조 중 "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고"를 "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사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"로 한다.

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에 제외한다.

마.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[별표 1의3]

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 항목(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관련)

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,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(이하 "보험금등"이라 한다)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

- 1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(「보험업법」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)
- 2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(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)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
- 3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
- 4.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
- 5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험료의 납부시기 등) ①	제16조(보험료의 납부시기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	3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	
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	
합계액을 말한다.	
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	1
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:	
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	
균한 금액	
가.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	가. <u>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</u>
3조제1항제1호나목(「보험	<u> </u>
업법」 제5조제3호에 따른	
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	
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	
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	
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	
한다), 다목, 같은 항 제2호	
<u>및 제3호</u> 에 따라 해당 사	
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	
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	
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	
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	
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	

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나. (생 략)

- 2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 술평균한 금액
 - 가.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 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 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 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 술평균한 금액

나. (생 략)

- 3. (생략)
- ④・⑤ (생략)
- 제16조의4(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제 특별기여금의 납부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 액을 말한다.
 - 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
 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

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:
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:

나. (현행과 같음)
2
가. <u>별표 1의3 제5호</u>
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④・⑤ (현행과 같음)
16조의4(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
특별기여금의 납부 등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

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 제1항제1호나목(「보험업법」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), 다목, 같은 항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 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(특별기여금 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 를 산술평균한 금액

2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 2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: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 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 보증하기 위하여 「보험업 법」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| 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

균한 금액

가. 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나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 른 수입보험료(특별기여금 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 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 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)

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 술평균한 금액 가. 별표 1의3 제5호의 금액 나.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「보 험업법」 제108조제1항에

전(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 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 다)을 산술평균한 금액

3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

제21조(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감 제21조(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감 독)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 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----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

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 체하는 금전(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 체하는 금전을 말한다. 다 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 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 전을 말한다)

- 3. (현행과 같음)
- 4·5 (현행과 같음)

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 라 투자매매업자 • 투자중개업 자의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「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 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 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 액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.

독) -----

치를 할 수 있다.

지도 ·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 그 업무 ·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 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·서류.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, -----

<신 설>

[별표 1의3]

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 항목(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관련)

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,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(이하 "보험금등"이라 한다)의 지 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다음 각 호 의 금액

- 1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 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 하여 적립한 금액(「보험업법」 제5조 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다)
- 2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결 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(보험회 사가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)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 립한 금액
- 3.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 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 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
- 4.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

 5.
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

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

 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

 여 적립한 금액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u>나.</u> (생략)

다. (생략)

<신 설>

2. 개별기준 (생략)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에 제외한다.

<u>다.</u> (현행과 같음)

라. (현행과 같음)

- 마.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

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

 수 없다.
- 2. 개별기준 (현행과 같음)